

作成方法 작성방법

※ 死亡申告書は1部を作成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p>① 死亡者 사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登録基準地：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にはその国籍を記入します。 등록기준지：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に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または、出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주민등록번호：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기재합니다. 死亡日時：〈例示〉午後 2時 30分(X)→ 14時 30分(O), 夜 12時 30分(X)→ 翌日 0時 30分(O) 사망일시：〈예시〉 오후 2시 30분(X) → 14시 30분(O), 밤 12시 30분(X) → 다음날 0시 30분(O) -韓國の国民が外国で死亡した場合、現地死亡時刻を西暦および太陽暦で記入しますが、サマータイム実施期間中に死亡した場合、死亡時刻の横に“(サマータイム適用)”と表示します.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死亡場所の区分：㉑住宅は死亡場所が死亡者の家や両親親戚などの家で死亡した場合を含む. 사망장소 구분：㉑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㉒その他は例示以外に飛行機、船舶、汽車などその他の場所に該当する場合 ㉒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p>②その他の事項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死亡診断書(死体検案書)の未添付時の理由など、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p>③申告人 신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資格欄には該当項目に“○”を表示し、㉒その他は死亡場所を管理する者などが含まれます.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㉒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p>④提出人 제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提出者(申告人が作成した申告書を申告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だけ記載)の姓名およ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 [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と対照]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p>※ 下記の状況は「統計法」第24条の2によって統計庁が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p>	
<p>㉑ 最終卒業学校 최종 졸업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死亡者の最高卒業学校は教育部長官が認定する全ての定規機関を基準として記載し、各学校の在学(中退)者は卒業した最終学校の該当番号に(○)で表示する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例示〉대학교3학년 在学(中退) → ㉑ 高等学校(○)で表示する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㉑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添附書類

- 死亡者に対する診断書や検案書1部.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 死亡の事実を証明できる書面(診断書や検案書を添付できない場合):下記の1部.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 ①国内または外国の権限のある機関が発行した死亡した事実を証明する書面
-例：公共機関の死亡診断書 又は 埋葬許可書, 事実和解委員会の実事実究明決定文, 政府記録保管所に 保存中の財務部作成の被収容者死亡者名簿, 外国の公共機関などが発行したその国の方式によって 死亡届けの事実を証明した署名
 - ①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 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②軍人が戦闘以外の事変によって死亡した場合 部隊長などが死亡事実を確認しその名義で作成した戦死確認書
②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③その他：証明書(家族関係登録例規 第505号 別紙 様式)
- 証明人が 洞・里統長の場合：1名の証明ではならず, 原則的に洞・里統長を証明する書面を添付.
- 証明人が友人の場合：2名以上の証明が必要, 証明人の印鑑証明書, 住民登録証の写本, 運転免許書の写本, パスポートの写本のうち1部を添付.
 - ③기타：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일인 경우：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下記の3項は家族関係登録官庁で電算システムでその内容を確認できる場合、添付を省略します.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死亡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1通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 第443号によって]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한]
- 申請人が出席した場合：身元証明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신분증명서
-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申請人の身分証明書の写本, 提出人の身分証明書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郵送提出の場合：申請人の身分証明書の写本 우편제출의 경우：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申請人が成人後見人の場合 4項の書類以外に青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を一緒に添付しましょう.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5. 死亡者が外国人の場合：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または外国人登録簿)写本,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財産相続の限定承認 及び 相続放棄の案内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この案内は死亡申告とは関係がない内容です.
詳しい内容は家庭裁判所(地方裁判所)または支援窓口にお問い合わせ下さい.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意義 - 限定承認：相続人が相続した財産の範囲で相続を承認すること 의 의 -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相続放棄：相続財産に属するすべての権利義務の継承を放棄すること 상속포기：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方式 - 限定承認：相続財産の目録を添付して家庭裁判所に申告する. 방식 - 한정승인：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相続放棄：家庭裁判所に相続放棄の申告をする. 상속포기：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申告期間 - 相続開始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民法 第1019条 第1項)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相続人は相続債務が相続財産を超過する事実を重大な過失なしに相続開始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知ることができず 単純承認(民法 第1026条 第1号 又は 第2号によって単純承認したとみる場合を含む)をする場合そ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限定承認ができる.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증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管轄 - 相続開始地[被相続人の(最後)住所地]管轄裁判所 관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최후)주소지]관할 법원